

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9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7월 24일

제 안 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황의형

1. 수정이유

- 상담실 운영요원의 경우 조례안 제9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 상담실 운영요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상담실 운영요원중 상담원과 행정원의 인원을 각 1인씩으로 하고, 필요시 상담실장을 두도록 하되 상담실장은 파주시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거나 시장이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
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상담실운영요원) ①상담실에는 상담원 1인, 행정원(상담보조원) 1인을 두며, 필요시 상담실장을 둘 수 있다.

②상담실장은 파주시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거나 시장이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6조(상담실운영요원) <u>상담실에는 상담원, 행정원(상담보조원)을 두며 필요시 상담실장, 상담부장(전임상담요원)을 둘 수 있다.</u>	제6조(상담실운영요원) ①<u>상담실에는 상담원 1인, 행정원(상담보조원) 1인을 두며 필요시 상담실장을 둘 수 있다.</u> ②<u>상담실장은 파주시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거나 시장이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u>